

「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직제 및 정원규정」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.

2024년 4월 24일

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



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규정 제185호

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

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조직관리)”를 “(조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인평원의 조직은 원장 산하에 경영전략부, 강원학사운영부, 평생교육부, RISE 기획팀을 둔다.
- ② 경영전략부에는 경영지원팀과 인재육성팀을 둔다.
- ③ 강원학사운영부에는 관악학사팀과 도봉학사팀을 둔다.
- ④ 평생교육부에는 학습정책팀과 학습지원팀을 둔다.
- ⑤ 각 부서에는 각종 사업과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⑥ 강원학사운영부의 경우 각각 학사의 소재지에 위치하며, 그 외 부서는 정관상 주소에 위치한다.
- ⑦ 인평원의 기구표는 [별표1]과 같다.

제4조,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제3장제5조, 제6조 및 제4조로 한다.

제4조(종전의 제7조)의 제목 “(직급별 정원)”을 “(정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부서별 직원의 직급과”를 “인평원의 직급별”로 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6조(중전의 제5조)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사업비 내의 예산에서 채용하는 강원학사 전담 근로자는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채용절차 등을 간소화 할 수 있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.

제7조(중전의 제9조)제1호 중 “진흥원”을 “인평원을 대표하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2. 각 부서의 장은 원장을 보좌하고, 소관 부서의 업무를 총괄 지휘·감독한다.

제8조(중전의 제10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직무대행)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경영전략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각 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인평원 직제상 부서의 차하급자 순위로 대행한다.

제9조(중전의 제11조)의 제목 “(사무관장)”을 “(사무분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무국은”을 “경영전략부는”으로, “관장한다”를 “담당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경영지원 및 사무국 운영”을 “경영전략 기획 업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학사운영국은”을 “강원학사운영부는”으로, “관장하며”를 “담당하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평생교육국은”을 “평생교육부는”으로, “관장한다”를 “담당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RISE 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
1. RISE 계획 수립 지원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
2. RISE 센터 개소 및 전담법인 지정을 위한 제반 절차 이행

3. RISE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
4. RISE 공모·평가 등 성과관리체계 구축
5. RISE 예산, 회계 시스템 구축
6. 기타 RISE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

제14조를 제10조로 한다.

제10조(중전의 제14조)제2항 중 “인평원 실정에 따라 규칙·지침으로 정한다”를 “규칙·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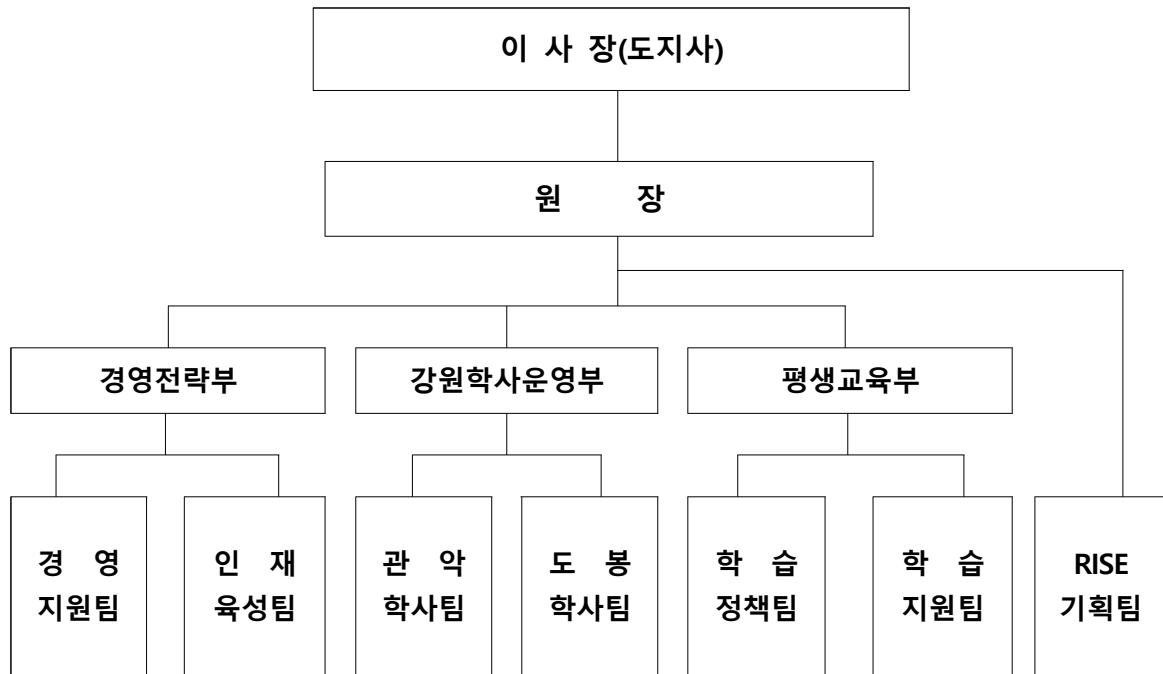
부칙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 등) 인평원의 모든 규정, 규칙 등의 직제명은 이 규정의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,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 다른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.

별표1과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1. 제3조 제7항 관련]

기 구 표



[별표2. 제4조 제1항 관련]

직급별 직렬별 부서 정원

직 급	직 렬	합 계	경 영 전략부	강원학사 운 영 부	평 생 교육부	RISE 기획팀
합 계		38	14	11	10	3
4급 (부장)	소 계	3	1	1	1	
	일반행정 · 교육행정	3	1	1	1	
5급 (팀장)	소 계	7	2	2	2	1
	일반행정	3	1	1		1
	교육행정	1			1	
	일반행정 · 교육행정	2	1		1	
	일반행정 · 교육행정 · 급식관리	1		1		
6급 (차장)	소 계	8	3	2	2	1
	일반행정	2	1			1
	교육행정	1			1	
	일반행정 · 교육행정	3	2		1	
	일반행정 · 교육행정 · 급식관리	2		2		
7급 (대리)	소 계	13	4	4	4	1
	일반행정	5	3	1		1
	교육행정	2			2	
	일반행정 · 교육행정	4	1	1	2	
	일반행정 · 교육행정 · 급식관리	2		2		
8~9급 (주임)	소 계	7	4	2	1	
	일반행정	4	4			
	일반행정 · 교육행정	1			1	
	일반행정 · 교육행정 · 급식관리	2		2		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(이하“인평원”)의 <u>조직과 구성원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직제 및 정원</u> ----- -----.
제2조(적용범위) <u>조직과 구성원 및 직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</u>	제2조(적용범위) <u>인평원의 직제와 정원</u> ----- ----- <u>규정하는 경우를</u> -----.
제3조(조직관리) <u>원장은 관장업무와 조직권한의 행사, 직원의 활용 등에 있어 항상 유효적절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조직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</u>	제3조(조직) ① <u>인평원의 조직은 원장 산하에 경영전략부, 강원학사운영부, 평생교육부,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이하 “RISE”) 기획팀을 둔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② 경영전략부에는 경영지원팀과 인재육성팀을 둔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③ 강원학사운영부에는 관악학사팀과 도봉학사팀을 둔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④ 평생교육부에는 학습정책팀과 학습지원팀을 둔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⑤ 각 부서에는 각종 사업과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⑥ 강원학사운영부의 경우 각각 학사의 소재지에 위치하며, 그 외 부서는 정관상 주소에 위치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⑦ 인평원의 기구표는 [별표1]과 같다.</u>
제4조 (생 략)	제5조 (현행 제4조와 같음)
제5조(직원) ① (생 략)	제6조(직원) ① (현행과 같음)
<u>② 사업비 내의 예산에서 채용하는 조리원·미화원·경비원·보일러기사 등 강원학사 전담 근로자는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채용절차 등을 간소화 할 수 있다.</u>	<u>② 사업비 내의 예산에서 채용하는 강원학사 전담 근로자는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채용절차 등을 간소화 할 수 있다.</u>

제6조(기구) ① 원장 직속으로 사무국, 학사운영국, 평생교육국을 둔다.

② 사무국에는 경영지원팀과 인재육성팀을, 평생교육국에는 교육기획팀과 교육운영팀을 두며, 정관상 주소에 위치한다.

③ 학사운영국에는 관악학사팀과 도봉학사팀을 두며 각각 학사 소재지에 위치한다.

④ 인평원 기구표는 [별표1]과 같다.

제7조(직급별 정원) ① 부서별 직원의 직급과 정원은 [별표2]와 같다.

② (생략)

제8조(위원회) 사업과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무국과 학사운영국, 평생교육국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4장 직무 및 업무분장

제9조(직무) 인평원의 임·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원장은 진흥원 업무를 총괄한다
2. 사무국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무국 업무를 지휘·감독한다.

3. 학사운영국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강원학사 업무를 지휘·감독한다.

4. 평생교육국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평생교육 업무를 지휘·감독한다.

제10조(직무대행) ① 원장의 결원·출장 등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사무국장의 결원·출장 등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경영지원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<삭 제>

제4조(정원) ① 인평원의 직급별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7조(직무) -----.

1. ----- 인평원을 대표하고 -----.
2. 각 부서의 장은 원장을 보좌하고, 소관 부서의 업무를 총괄 지휘·감독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제8조(직무대행)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경영전략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각 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인평원 직제상 부서의 차하급자 순위로 대

③ 학사운영국장의 결원·출장 등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관악학사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평생교육국장의 결원·출장 등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기획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사무관장) 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인평원의 전반적 경영지원 및 사무국 운영

2. ~ 7. (생략)

8. 기타 인평원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

② 학사운영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「강원학사 설치 및 운영규정」으로 강원학사의 사무를 관악·도봉학사별로 구분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③ 평생교육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~ 7. (생략)

<신설>

제12조(사무집행의 위임)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

행한다.

제9조(사무분장) ① 경영전략부는 ----- 담당한다.

1. ----- 경영전략 기획 업무

2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기타 경영지원 전반 및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

② 강원학사운영부는 ----- 담당하며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평생교육부는 ----- 담당한다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④ RISE 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
1. RISE 계획 수립 지원 및 세부실행 계획 수립

2. RISE 센터 개소 및 전담법인 지정을 위한 제반 절차 이행

3. RISE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

4. RISE 공모·평가 등 성과관리체계 구축

5. RISE 예산, 회계 시스템 구축

6. 기타 RISE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

<삭제>

게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사무전결규정으로 정한다.

1. 원장의 결재를 받은 공사·제조·물품구매에 관한 기본방침 또는 계획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
2. 임금·급여·진흥원 전출금 등의 무적 경비와 사업장과 시설 운영비의 원인행위 및 지출
3.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
4. 직원의 임면과 복무감독
5. 기타 사무국, 강원학사 운영 및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임 전결할 수 없다.

1.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
2. 재산의 매각 및 매입
3. 사업장의 임대 및 전세
4. 경영사업의 확대 및 축소
5. 장기 차입금의 차입
6. 재산의 담보설정
7. 예산으로 승인되지 않은 비용의 지출
8. 한도액을 초과한 일시 차입
9. 적립기금의 사용
10. 기타 이사회의 결정을 요하는 중요사항

제13조(보고 및 검사) 원장은 사업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.

제14조(기타) ① (생략)

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장이 인평원 실정에 따라 규칙·지침으로 정한다.

<삭 제>

제10조(기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 규칙·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